

제 17 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건 명	구미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결의 건					
집 회 기 간	1992. 6. 8 - 6. 9 (2일간)					
의 결 일 시	1992. 6. 9	재 적 의 원	21 명	출 석 의 원	21 명	
의 결 사 항 ○ 의결결과 : 원안대로 의결 첨 부 : 구미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부. 끝 1992 년 6 월 10 일 구 미 시 의 회 의 장 문 창 식						
의 결 시 찬 반 표 시	찬 성	14 명	반 대	4 명	무 효	3 명

구미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구미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상·하수도료, 전기료, 도시가스료, 폐기물수집수수료,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이하 "통합공과금"이라 한다)의 효율적 과징으로 주민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공과금과징을 위한 검침, 실사, 조정, 민원 처리와 전산시설에 의한 고지서발급, 송달 및 징수등을 위해 소요되는 제경비에 한한다.

제3조 (관리자) ① 이 특별회계의 업무를 관리·집행하기 위하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는 총무국장으로 한다.

제4조 (독립재산) 이 특별회계는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회계년도) 이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6조 (일시차입금) ① 이 특별회계의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특별회계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 차입금은 당해 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 (수입) 이 특별회계의 수입은 타회계의 전입금과 위탁기관 (한국전력공사, 한국방송공사, 도시가스회사)의 부담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8조 (지출) 이 특별회계의 지출은 통합공과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인건비, 전산처리비, 관리비, 기타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9조 (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다.

제1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 사무관리를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및 공기업특별회계
의 예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를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 17 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건 명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 (안) 의결의 건					
집 회 기 간	1992. 6. 8 - 6. 9 (2일간)					
의 결 일 시	1992. 6. 9	재 적 의 원	21 명	출 석 의 원	21 명	
의 결 사 항 ○ 의결결과 : 원안대로 의결 첨 부 :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 (안) 1 부. 끝 1 9 9 2 년 6 월 10 일 구 미 시 의 회 의 장 문 창 식						
의 결 시 찬 반 표 시	찬 성	14 명	반 대	4 명	무 효	3 명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위임사항)중 "별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내무행정	· 통합공과금업무에 관한 다음 권한	1. 통합공과금 검침 · 실사 업무 2. 통합공과금 독촉장송달 업무 3. 통합공과금 관련 민원 처리 및 중계업무 4. 통합공과금 자원 및 변동사항 정리	행정지시	동

부 칙

이 조례는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17 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건 명	구미시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징수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집 회 기 간	1992. 6. 8 - 6. 9 (2일간)					
의 결 일 시	1992. 6. 9	재 적 의 원	21 명	출 석 의 원	21 명	
의 결 사 항 ○ 의결결과 : 원안대로 의결 첨 부 : 구미시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징수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 (안) 1부. 끝						
1992 년 6 월 10 일						
구 미 시 의 회 의 장 문 창 식						
의 결 시 찬·반 표 시	찬 성	14 명	반 대	4 명	무 효	3 명

구미시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징수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징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8조 제 1항중 "매분기 말일까지" 을 삭제하고 동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수료는 매월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10일, 20일, 말일로 하며,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2. 통합고지서에 의한 수납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이며, 관리기간 경과분에 대하여는 연체체납 명부에 의하여 자체 징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17 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건 명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집 회 기 간	1992. 6. 8 - 6. 9 (2일간)				
의 결 일 시	1992. 6. 9	재 적 의 원	21 명	출 석 의 원	21 명
의 결 사 항 ○ 의결결과 : 원안대로 의결 첨 부 :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 (안) 1 부. 끝 1992 년 6 월 10 일 구 미 시 의 회 의 장 문 창 식					
의 결 시 찬 반 표 시	찬 성	14 명	반 대	4 명	무 효 3 명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요금은 매월납으로 하고, 납부 마감일을 10일, 20일, 말일로 하여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통합고지서에 의한 수납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이며, 관리기간 경과분에 대하여는 연체 체납 명부에 의하여 자체 징수하여야 한다.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통합공과금 고지서에 포함하여 시장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통합고지서에 미수액을 명시하여 미수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과징토록 타회계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17 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건 명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집 회 기 간	1992. 6. 8 - 6. 9 (2일간)					
의 결 일 시	1992. 6. 9	재 적 의 원	21 명	출 석 의 원	21 명	
의 결 사 항 ○ 의결결과 : 원안대로 의결 첨 부 :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 끝 1992 년 6 월 10 일 구 미 시 의 회 의 장 문 창 식						
의 결 시 찬 반 표 시	찬 성	14 명	반 대	4 명	무 효	3 명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각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공공 하수도의 사용료는 매월 월납으로 하고, 납부 마감일은 10일, 20일, 말일로 하여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 ② 통합고지서에 의한 수납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이며 관리기간 경과분에 대하여는 연체 체납명부에 의하여 자체 징수하여야 한다.
- ③ 제①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와 고지서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④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허가 신청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허가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17 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건 명	구미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의결의 건				
집 회 기 간	1992. 6. 8 - 6. 9 (2일간)				
의 결 일 시	1992. 6. 9	재 적 의 원	21 명	출 석 의 원	21 명
의 결 사 항					
o 의결결과 : 원안대로 의결					
첨 부 : 구미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1부. 끝					
1992 년 6 월 10 일					
구 미 시 의 회 의 장 문 창 식					
의 결 시 찬 반 표 시	찬 성	12 명	반 대	8 명	무 효 1 명

구미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조례는 구미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이하 "이동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관리) 이동 도서관의 설치,관리는 새마을문고중앙회 구미시지부 (이하 "문고지부"라 한다) 회장에게 위탁한다.

제3조 (사업) ① 이동 도서관은 독서를 통하여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도서의 수집 및 순회 대여
2. 독서 상담 및 자문
3. 국민독서 진흥운동
4.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
5.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 이동 도서관의 사업은 주민에게 무상으로 행한다.

제4조 (운영위원회) ①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문고지부에 이동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문고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문고회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구미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1인
2. 새마을문고 지도자 2인이상
3. 기타 독서운동 분야에 식견이 높은자 3인 이상

제5조 (예산 및 결산) ① 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구미시 보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문고지부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3월전까지 구미시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미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신청받은 보조금의 금액을 조정하여 당해 회계 연도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문고지부 회장은 구미시의 예산에 계상된 보조금의 금액이 확정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 연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이동 도서관 예산안을 수립하여 구미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문고지부 회장은 회계년도 경과후 3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미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직원임용) ① 이동도서관 직원은 문고지부 회장이 구미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새마을문고중앙회 경상북도 지부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한다.

② 이동 도서관에는 1개 차량에 사서1명과 운전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직원을 둔다.

③ 이동도서관 직원의 인건비 지급 기준은 당해 년도의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급여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지도,감독) ① 구미시장은 문고지부 회장의 새마을 이동도서관 설치, 운영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 감독한다.

② 이동도서관의 직원 임용기준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새마을문고 중앙회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새마을문고중앙회 경상북도지부 회장은 이조례 및 제2항의 새마을문고중앙회 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고지부 회장을 지도, 감독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17 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건 명	공유재산 기부채납 관리계획 승인(안) 의결의 건				
집 회 기 간	1992. 6. 8 - 6. 9 (2일간)				
의 결 일 시	1992. 6. 9	재 적 의 원	21 명	출 석 의 원	21 명
의 결 사 항 ○ 의결결과 : 원안대로 의결 첨 부 : 공유재산 기부채납 관리계획 승인(안) 1부. 끝					
1992 년 6 월 10 일 구 미 시 의 회 의 장 문 창 식					
의 결 시 찬 반 표 시	찬 성	21 명	반 대	명	기 권 명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 9 2 년 도 관 리 계 획 총 관 표

회계명 :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단위 : m²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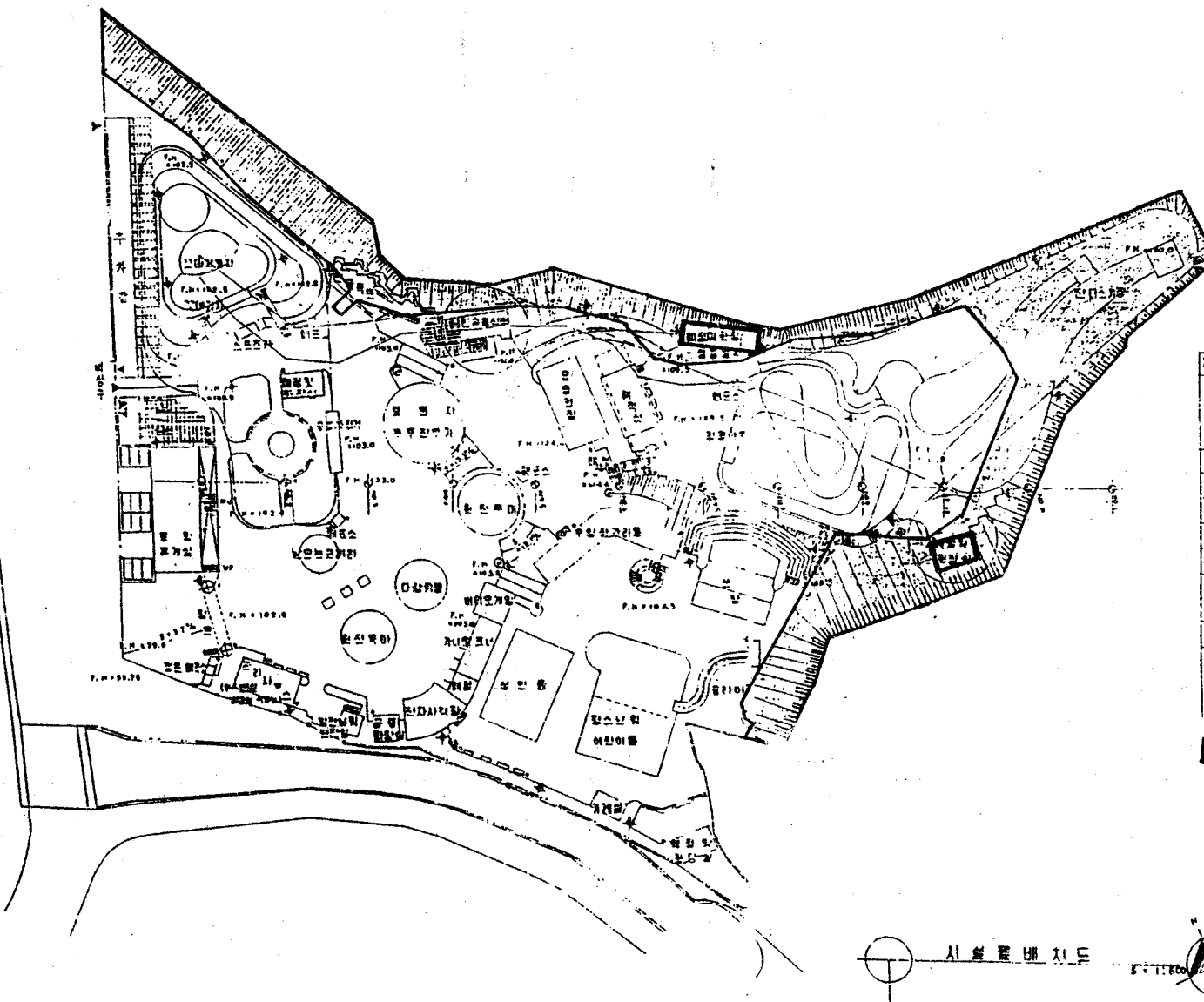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 수	수 량	금 액	건 수	수 량	금 액	건 수	수 량	금 액	
취 득	계	토 지 건 물 기 타	1	220	63,849				1	220	63,849	
	1. 매 입	토 지 건 물 기 타										
	2. 교환으로 취득	토 지 건 물 기 타										
	3. 기 타 취 득	토 지 건 물 기 타	1	220	63,849				1	220	63,849	

' 9 2 년 도 취 득 대 상 재 산 목 록

회계명 :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단위 : m²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 성 명	비 고
	지 목	소 재 지	시 설 명	건 평					
1	임 야	구미시 남동동 산5~9	(A) 매점및화장실	40	19,524	상반기	지방재정법 제75조및 동법시행령 제82조에 의거 기부채납 으로 취득	구미시 송정동 50 구 미 시 장	
			(B) 매점및화장실	60	22,555				
			청 용 열 차 플 랫 폼	120	21,780				
계				220	63,849				



기	종	종	적산	비	수	합	비	고
①	인	지	인	인	인	인	인	인
②	인	지	인	인	인	인	인	인
③	가	로	로	로	로	로	로	로
④	가	로	로	로	로	로	로	로
⑤	가	로	로	로	로	로	로	로
⑥	가	로	로	로	로	로	로	로
⑦	가	로	로	로	로	로	로	로
⑧	가	로	로	로	로	로	로	로
⑨	가	로	로	로	로	로	로	로
⑩	가	로	로	로	로	로	로	로
⑪	가	로	로	로	로	로	로	로
⑫	가	로	로	로	로	로	로	로
⑬	가	로	로	로	로	로	로	로
⑭	가	로	로	로	로	로	로	로
⑮	가	로	로	로	로	로	로	로
⑯	가	로	로	로	로	로	로	로
⑰	가	로	로	로	로	로	로	로
⑱	가	로	로	로	로	로	로	로
⑲	가	로	로	로	로	로	로	로
⑳	가	로	로	로	로	로	로	로
㉑	가	로	로	로	로	로	로	로
㉒	가	로	로	로	로	로	로	로
㉓	가	로	로	로	로	로	로	로
㉔	가	로	로	로	로	로	로	로
㉕	가	로	로	로	로	로	로	로
㉖	가	로	로	로	로	로	로	로
㉗	가	로	로	로	로	로	로	로
㉘	가	로	로	로	로	로	로	로
㉙	가	로	로	로	로	로	로	로
㉚	가	로	로	로	로	로	로	로
㉛	가	로	로	로	로	로	로	로
㉜	가	로	로	로	로	로	로	로
㉝	가	로	로	로	로	로	로	로
㉞	가	로	로	로	로	로	로	로
㉟	가	로	로	로	로	로	로	로
㊱	가	로	로	로	로	로	로	로
㊲	가	로	로	로	로	로	로	로
㊳	가	로	로	로	로	로	로	로
㊴	가	로	로	로	로	로	로	로
㊵	가	로	로	로	로	로	로	로
㊶	가	로	로	로	로	로	로	로
㊷	가	로	로	로	로	로	로	로
㊸	가	로	로	로	로	로	로	로
㊹	가	로	로	로	로	로	로	로
㊺	가	로	로	로	로	로	로	로
㊻	가	로	로	로	로	로	로	로
㊼	가	로	로	로	로	로	로	로
㊽	가	로	로	로	로	로	로	로
㊾	가	로	로	로	로	로	로	로
㊿	가	로	로	로	로	로	로	로

시문자

NO.	REV. DATE AND TIME
	DAYS
(주)에안건축 한국엔지니어링공사 TEL.091-876-1144 FAX.091-876-1145	
FROM TITLE	
두미금오랜드	
지성공사	
DRAWING TITLE	
시설물배치도	
APPROVED BY	DATE
CHECKED BY	SHEET NO.
DRAWN BY	DRAWING NO.
TOTALS : 600	L-C2

시 설 배 치

5-1-66

